

2006 평화통일여성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

○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1시-오후2시30분

○ 장소 :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주관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주최 : 여성가족부

2006 평화통일여성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

○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1시-오후2시30분

○ 장소 :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주관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주최 : 여성가족부

♣ 진행 ♣

- 사 회 - 박현선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
- 개회사 - 김윤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축 사 - 신현택 (여성가족부 차관)

1. 11:00-12:00 기조발표

- 발표자: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국제협력”
- 발표자: 윤덕화 (명지대 북한학과교수)
“여성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12:00-13:00 지정토론

- 토 론 자: 남문희 (시사저널 기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론형성과 국민적 과제”
- 토 론 자: 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을 위한 상황적 조건과 나아가 한 방향”
- 토 론 자: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NGO의 역할”
- 토 론 자: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여성NGO의 역할”

3. 13:00-14:30 전체토론 및 식사

토론 참석 대상: 발표자, 지정토론자, 초청토론자 전원

■ 발제문: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1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국제협력”	
■ 발제문: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교수)	19
“여성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토 론 문: 남문희 (시사저널 기자)	4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론형성과 국민적 과제”	
■ 토 론 문: 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4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을 위한 상황적 조건과 나가야 할 방향”	
■ 토 론 문: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48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NGO의 역할”	
■ 토 론 문: 김숙임 (평화들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5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여성NGO의 역할”	
■ 부록	
○ 6자회담 타결 공동성명 전문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회원가입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국제협력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RIIA)

1. '6자회담 공동성명'과 한반도 평화체제

지난 2002년 10월에 북핵위기가 재연된 이래 거의 3년 만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개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이 타결되었다.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성명의 의의는 △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천명,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이정표 제시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난 1~3차 6자회담은 사실상 북한의 핵포기를 겨냥한 "북핵 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목표를 "한반도의 비핵화"에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한국과 주한미군의 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으로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공동성명」은 또다른 회담의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제시함으로써 핵문제의 해결 이후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직접 관련 당사자가 별도로orum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협상기로 약속되어 있어,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성명은 비록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도덕적 구속력을 갖춘 6개국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함으로써 나름대로 이행의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미국은 북한이 쉽게 6자회담의 장에서 뛰쳐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성명’에 핵무기 또는 재래식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공약은 문서로 작성되어 6개국 대표가 공동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을 외교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강경책으로 돌아간다면, 문서로 보장된 미국의 대북 불가침 공약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은 북한이 협상을 깨고 핵확산에 나서지 못하도록 미끼를 물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미국이 경수로 제공요구를 계속 거칠할 경우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합의사항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무기·핵물질의 유출 등 핵확산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 불가침 공약은 유지되는 것이고, 미국이 대북 불가침 공약을 먼저 깨지 않는 한 북한도 핵실험 단행이나 핵물질·핵무기의 확산과 같은 모험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공동성명’은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안전장치일 뿐 적극적으로 ‘공동성명’의 이행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부산 APEC을 한반도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 APEC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북핵 구두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APEC회의를 전후한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정상외교를 통해 ‘6자 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차관급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관련국가간 정상회담과 21개국의 정상회담에서 동의를 얻고 이행을 촉구한 것은 향후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II. 동북아 신질서의 방향과 한반도평화체제

1. 동북아 신안보질서의 방향

냉전시기 동북아지역에는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로 묶여 한 축을 이루고, 북·중동맹과 북·소동맹이 서로 느슨하게 엮여 다른 한 축을 이루며 대립해 왔다. 이른바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의 대립구조는 1990년에 한국과 러시아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2년 뒤인 1992년 한국은 중국과도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이처럼 ‘남방삼각’의 한국이 ‘북방삼각’의 주축국인 러시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냉전구조의 한 축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북아 냉전구조의 다른 한 축이 북한과 일본, 미국의 관계는 여전히 냉전시기의 적대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북·일 관계정상화 노력은 1990년에 시작되었으나 ‘이은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그 뒤 7년 5개월 만인 2000년 4월에 재개되고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나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방북까지 하였으나 납치문제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중단되었다. 북·미 관계정상화 노력은 90년대 초반 1차 핵 위기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냉전구조의 온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북한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주장 속에는 수교를 포함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수교함으로써 동북아 냉전구조의 한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미·일과 적대하며 냉전구조 속에 갇혀 있다는 데 대한 위기감의 발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수교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미, 북·일 수교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변수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라고 볼 수는 없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체편의 과제는 북·일 및 북·미

간의 수교를 이루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를 형성하여 새로운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동성명」이 지향하는 새로운 동북아국제질서는 어떤 모습인가? 이번 「공동성명」은 여러 측면에서 지난 1972년부터 시작해 3년간의 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은 「헬싱키 최종선언(Helsinki Final Act)」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헬싱키선언」은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의 토대가 된 문서이며, 동서 양 진영의 분단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의 냉전을 종식하는 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서이다.

「헬싱키선언」은 냉전당시 동서로 갈렸던 유럽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결성해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헬싱키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정책라인이 라이스-졸릭-힐-버시바우 등 유럽전문 외교관들로 구성되고 있고, 신임 주한미사령관 버웰 벨 대장도 유럽주둔 미 육군사령관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헬싱키선언」의 틀을 과연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들의 형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성명」에는 제2항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권존중, 영토보존 및 무력불사용, 내정불간섭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밝히고, 제3항에서는 대북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으로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 경제협력력을 증진키로 6개국이 약속하였다.

이것은 각각 「헬싱키선언」의 제1바스켓, 제2바스켓에 상응하는 것이다. 「헬싱키선언」의 제1바스켓은 ‘유럽안보, 신뢰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헬싱키선언」의 제2바스켓에서는 ‘과학기술 및 경제협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참가국간 관계를 규정하는 ‘안전보장 10개 원칙’은 i)주권의 평등과 주권의 고유한 제한적의 존중, ii)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사용의 억제, iii)국경 불가침, iv)국가의 영토보존 존중, v)분쟁의 평화적 해결, vi)내정불간섭, vii)인권 및 사상, 양심, 종교, 신조를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보장, viii)제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 존중, ix)국가간 협력증진 노력, x)국제법에 규정된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이 가운데, ii)~vi), x) 등 6개 항목은 「공동성명」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서 「헬싱키선언」 제1바스켓에서 밝힌 안전보장 ‘10원칙’과 신뢰구축조치(CBMs)를 취하기에는 ‘국제적 조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헬싱키 평화체제’의 경우, 바르샤바동맹과 나토동맹 간의 적절한 균형을 전제로 신 리구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러시아(1990), 중국(1992)의 수교로 ‘북방삼각’이 이미 무너졌으나, 북한과 미국, 일본과는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냉전적 적대관계에 있다. 따라서 헬싱키방식의 동북아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북·일, 북·미 수교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밖에 양자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헬싱키선언」의 제3바스켓에 담긴 ‘인도적 및 여타 분야의 협력’ 조항이다. 「공동성명」에는 인도적 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다 중국의 반발로 판이 깨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 수교과정에서 인도적 협력 및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바로 「공동성명」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미국측의 시도인 것이다.

2.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지난 11월 9~11일간 개최되었던 1단계 5차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양자접촉이 기대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지난 ‘6차회담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들로 별도포럼”을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평화협정체제 문제는 지난 7월 9일 한·김계관 사이의 북·미 베이징 접촉에서 합의됐고, 7월 22일 북한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번에 등장한 ‘평화협정체제’ 의제는 지난 97~99년 사이에 진행했던 남·북한+미·중이 참가하는 4차회담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 안전보장의 제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은 당초 대북 안전보장방식으로 ‘북·미 불가침 조약’이나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했지만, ‘북·미 수교협정’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6차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 수교를 내걸었다. 그러나 당장 북·미 수교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우선 북·미 적대관계의 철폐가 필요하

다고 보고, '평화협정체제→ 북·미 수교협정'이라는 단계적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성명'에서 말하는 평화협정체제란 그 동안 북측이 주장해 왔던 '잠정 평화체제'와 같은 의미이다. 잠정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정식 국교를 맺기 이전이라도 미국의 대표부가 평양에 설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같이 남·북·미간, 특히 북·미간에 평화공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은 북·미 수교협정을 추진할 것이다.

여기서 별도포럼의 당사자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은 지난 1984년 김일성 주석의 남·북·미 3자회담 제안 때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한 적도 있지만, 그 뒤 줄곧 한국을 배제해 왔으며 1996년 '조·미 잠정협정' 제안 때도 그랬다.

하지만 1998년 북측이 '잠정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한 남·북·미 평화협정을 제안한 바가 있으며, 금년 5월 12일 한성렬 유엔차석대사의 『USA Today』 인터뷰와 그 뒤 몇 차례의 비공식 접촉에서 한국을 '잠정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정식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을 고집했던 이유는 평화협정에 들어가게 될 '상호불가침, 적대행위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문서로 보장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만 그 내용들이 「북·미 수교협정」을 통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이번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수교로 목표를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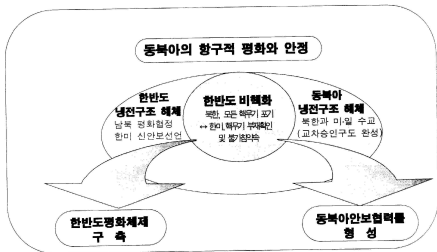
북한과 미국은 교전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북·미간에는 영토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평화협정이라는 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인 '상호불가침', '적대행위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수교협정 문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미간에 국경문제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관련한 전쟁책임문제나 배상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다면 굳이 북·미간에 수교협정 외에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불필요하다.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였던 한국과 중국도 1992년 국교정상화 때에 「한·중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채 「한·중 수교협정」만을 체결하였다.

다만, 북·미 수교가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수교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북·미 수교협정」이 3국과의 조약,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자회담 공동성명」의 개념도



<출전>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5년 9월, 14쪽.

II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국과의 협력

1. 북·미 수교 문제

알렉산더 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1월 9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을 다 하겠다"며 "북한 역시 핵포기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미국의 기본입장을 강조하였다.

북측이 제1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4단계 일정'에 따르면 '경수로 완공과 북핵 시설의 해체' 시점보다 바로 먼저 '북·미, 북·일 외교관계의 수립'이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북한의 핵폐기 완료 후에 북·미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무성에 미국의 조시 부시 전대통령 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북한이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급진전되었던 전례로 볼 때 북측의 국면돌파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미 수교는 양국 정부당국의 합의와 서명뿐 아니라 의회의 비준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교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 의회가 요구하는 우려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북·미 수교는 양국 정부당국의 합의와 서명뿐 아니라 의회의 비준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 의회가 요구하는 우려사항의 해소가 국교정상화하는 데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디트리니 북핵담당 특사는 북한인권, 탄도미사일, 위폐·마약 등 불법행동, 생화학무기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진전(process in motion)이 있으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인권문제 등에서 북측이 성의를 보일 경우 먼저 평양주재 미국대대표부를 신설하는 등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한 뒤, 공식적인 북·미 수교는 북측이 인권문제나 탄도미사일, 불법행동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미 의

회의 동의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관계정상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협정 체결, 평양 (연락) 사무소 개설**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천명(11.9.)한 바 있다.

2 평화체제 이행과 미국과의 협력

지난 1996-99년까지 4년간 여섯 차례 개최되었던 4자회담에서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협정'의 두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당초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문제만을 논의하길 원했지만, 한·미 양국의 반대로 '긴장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된 것으로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협정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임무를 띤 유엔사령부(UNC)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잃어버리게 되어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미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유엔사의 설치에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설사 정전협정이 파괴되어 임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해체결의가 필요하다.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대전협정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을, 유엔사령관이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재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한미연합사는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반환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북한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이미 한미 양국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조기이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방어에 대한 의지를 훼손시키면서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과의 관계와 관련, 앞으로 한국군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군은 한국군에게 필요하면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월 8일 라포트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를 통해 유엔사강화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이 비핵화의 달성 없이 조급하게 평화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유엔사를 해체시키지 않고 존속을 결정하기 위한 예방조치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미 양국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한미동맹도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지난 11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와는 별도로 내년 1월부터 갖기로 합의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외교장관급 전략대화(SCAP,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과정에서의 한미공조는 급격한 '현상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 프로세스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V.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

1.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역할

미국의 세계전략뿐 아니라 동아시아전략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미국 내의 논쟁이 바탕에 깔려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여 중국이 지역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 국무부 관리들은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면서 중국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미국의 신전략이 미·중 양국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선언했지만, 한반도문제나 동북아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미국은 일본이 아닌 중국을 협의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론도 전략차원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중 포위망 구축이나 지역차원에서 패권의 대행자 역할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의 형성에서 미·중 협의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할 별도 포럼의 참가국을 어디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른바 '당사자문제'로 알려진 한반도평화협정의 참가국 문제는 지난 5월 12일 한성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USA Today』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과 미국을 당사자로 거명함으로써 관심을 끌었다.

이 인터뷰에서 한성열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새로운 체제, 즉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그 조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발언은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참가이다. 1984년 3자회담을 주장할 때부터 북한은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해 왔다.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당시 당사자로 서명했으나,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인민해방군은 지난 1958년에 철수하면서 사실상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행사해 오지 않았다. 또한 지난 1994년 중국군 대표도 북측 요청에 따라 군사정전위로부터 소환된 상태라는 점에서 과연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과연 중국이 당사자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97년~1999년의 4자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이 북·미 접촉을 강화하고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중국을 끌어들었다. 당시 북한이 주장한 3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은 옵서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북한은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평화협정체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지위가 옵서버가 아니라 당사자 자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사자 지위라면 '3자 평화협정'도 좋다는 것이 한국의 생각이지만, 항배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다. 중국을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에서 배제할 경우 좀 더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에서 배제시킬 경우 한반도 비핵화나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에 필요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남북한이 서명당사자가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국제적인 보증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을 무시하기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2+2'방식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의제에 따라 남북간, 남·북·미간, 4자간 대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또는 '3자 공동안보위원회'로 평화보장관리기구를 대체할 수도 있으나, 남북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남북연합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 북·일 수교와 일본의 역할

미·중 양국의 협의하에 동북아 안보협력의 틀이 논의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참가국이 아니라 "직접 관련당사국"에 게만 참가타켓을 주기로 하는 등 일본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은 한, 중 양국과의 과거사, 영유권 분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주일미군의 재편을 둘러싸고도 미국과 갈등하는 등 동북아지역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 9.11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중 수교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일본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나 평양을 방문했던 고이즈미 총리는 동북아질서재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북·일 수교협상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9월 19일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인 9월 20일 마치무라 외상(당시)은 수교

협상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북·일 외무당국 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과 일본은 11월 3~4 양일간 1년여만에 양자협의를 갖고 국교 정상화 문제를 비롯해 과거청산과 납치문제 등 현안을 집중 협의하였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납치문제, △핵·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 △과거청산을 포함한 국교 정상화 등 3개 현안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과거청산문제 뿐만 아니라 「요코타 메구미」에 대한 일본측 유골감정 결과를 부정하고 북·중 국경지대에서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북한주민 납치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고 천명하였다.

북한이 주장한 「북한주민 납치사건」이란 2002년 11월 일본의 비정부기구(NGO)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재일조선인 귀국자와 일본인 처 및 그 가족 등 20여명을 일본으로 데려간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북측이 일본이 제기한 납치문제 및 가짜유골 논란에 대응해 「북한주민 납치사건」을 거론하여 맞불을 놓음으로써 북·일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수교협상은 2002년 「평양선언」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경제협력 자금 규모, △한일합방의 합법성 문제, △북·일 국교정상화 조약의 관할권문제 등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양국은 앞으로도 회담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음 회담일정을 잡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 뒤 북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수교협상 재개를 제의하였으며, 늦어도 2006년 1~2월중 본격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북·일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회담이 끝난 뒤, 일본측 대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淑孝)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매우 어려운 대화였으나 유익한 협의였으며 「납치, 안보, 과거사의 협의를 균형을 취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북한측 대표인 「송일호」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은 「이번 협의는 국교정상화 재개에 유익했다」고 말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인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북·일간의 현격한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질서재편과정에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본정부는 북·일 회담을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으로서는 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할 별도포럼에 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북·일 수교의 조건이나 속도를 지렛대로 한 일관적, 미·일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러시아의 역할

러시아도 동북아 질서재편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자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러시아는 80년대 후반 「고르바췌프」 서기장 시절부터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이나 동북아다자안보틀 논의뿐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논의에도 참가하기를 희망하나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문제는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강대국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문제는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와 정전협정의 서명국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가 동북아 질서재편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러시아가 배제될 경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이미 '새로운 경수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등 한반도문제에 발언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읍 서버 자격과 같이 간접적인 참가방식으로라도 러시아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정책고려사항

6자회담의 원칙선언이 이루어지고 이행계획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우리 국내적인 태세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비핵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대비한 국내체제의 정비와 남북관계의 재정립,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마련 등 수많은 과제가 대두하게 된다.

6자회담의 모델턴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한반도비핵화 과제가 저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힐 차관보는 '공동성명' 합의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강경파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10월 방북계획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전력에 열세를 느끼고 있는 북한 군부에게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이다.

한국에서도 ‘공동성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도한 재정부담과 급격한 ‘현상변경’을 우려하는 국내 일부의 시각도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이 지연되든, 아니면 원활히 추진되든 끊임없이 ‘현상변경’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중·일·러 등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 못지않게, 매 단계마다 예상되는 국내 반대파들의 비판과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정부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느냐에 한국, 아니 남북한을 포함한 한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

여기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한국정부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초당파적인 대북, 통일정책의 추진기반 마련

국회 내에 남북관계를 포함해 급변하는 동북아질서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대표자회의 성격의 ‘초당적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미 17대 국회에 남북관계발전특위(2004년 5월~2005년 6월말)가 있었으나 4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갖고 통일부장관 등을 출석시켜 현안보고를 받는 데 그쳐 통외통위와의 차별화에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회 내의 새로운 ‘초당적 기구’는 대북 및 통일정책의 국회 대표자회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과 여야총무, 각당의 대표급 원내인사, 통외통위 및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참석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초당파적인 대북, 통일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급격한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 변화에 여야나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야당도 이러한 기구가 진정으로 초당파적인 대북, 통일정책을 마련하는 토대로 삼아야

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발목이나 잡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 회담의 착수

남북 양측은 두 차례의 장성급회담을 갖고 휴전선 일대의 선전수단 제거와 서해상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연락소를 개소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합의에 따라 8월13일부터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를 개설하는 등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비핵화 추진과 별도포럼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뛰어넘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5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제3차 장성급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고 나아가 국방장관급 회담의 정례화도 추진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루기 위해 군비통제가 필수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은 남북 양측이 군 병력과 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운용적 군비통제’이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시나이반도에서 양측의 군대를 단계적으로 철수함으로써 평화정착에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협상과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군 장비와 병력의 감축과 같은 ‘구조적 군비통제’를 뒤로 미루고, 우선 양측 군대를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긴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조속한 마련

6자회담의 틀 외에 별도포럼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한반도비핵화보다는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할 경우 남북관계는 급진전될 수 있으나 한미동맹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양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된 한반도의 국면전환은 한미관계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가져왔다. 따라서 과거의 미숙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포괄적인 안보협력의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의 공동비전’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만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체제의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11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기존의 방위동맹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인권 등에 기초한 가치동맹을 지향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양국의 동맹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번 공동선언을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지침삼아 조속히 미래 한미동맹의 공동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일 대북 정책조정협의회의 재가동 검토

북핵문제의 포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일 및 북·미 수교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페리보고서」에 따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협의회(TCOG)’가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일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간의 이견은 물론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일본측이 납북문제를 제기하는 등 3국이 서로 제각각의 입장을 내놓아 북핵문제의 공동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TCOG의 재가동이 ‘한·미·일 삼각 동맹네트워크’의 재가동이 아닌가 하는 우

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당면한 복핵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한반도 및 냉전 구조의 해체를 위해 미·일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한시적’으로나마 TCOG의 재가동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22]

여성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윤 덕 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틀을 만들으로써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안보 개념과 평화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1) 안보: '민족안보' '인간안보' '공동안보'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가안보를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국가이익을 종종 국가안보 또는 군사력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군사력 증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분단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줄곧 정권안보 논리와 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안보논리는 군사력 중심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까지 적용됨으로써 민족 내부의 대결의식과 사회심리적 긴장의식을 일상화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분단상황의 남한과 북한은 이제 국가안보와 아울러 '민족안보'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갈등과 대결의 냉전체제 아래서 남북한 각자의 적극적인 군사력 중심의 안보정책의 강화는 역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더욱 심각한 안보 불안

을 초래했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긴장과 적대적식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추구의 싹을 퇴위보려는 노력을 항상 무산시켜왔던 것이다.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다. 참된 화해 협력 그리고 굳건한 평화체제의 확립이 민족안보의 선결과제로 떠오른다. 평화야말로 안보의 첩경이며 평화를 통한 안보는 국가안보와 더불어 한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민족안보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새로운 안보개념인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인간안보'는 한 국가의 경제, 군사적 우위를 갖대로 삼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과는 다르다. 최근 국가안보 보다 개인의 안전이 안보의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사회적 상황악화 등 광범위한 비군사적 요인으로부터도 제기된다. 사실 정치적 분쟁의 근원에는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불평등, 개발 등이 존재하므로 포괄적인 인간안보의 확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유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곧 세계 전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안보는 평화와 질서, 실업문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등 전세계적 차원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기의 극복을 문제삼는 안보 개념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안이 국가간 힘을 모아야 해결 가능한 것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권보호, 여성의 권익 향상, 지구 생태계 보전, 그리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금지 등 많은 이슈들은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인간안보의 개념은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동안보'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공동안보'의 개념은 핵무기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조건아래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과학 기술적 군사무기체제가 고도의 수준으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안

보는 적을 위해하거나 위압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적과 협력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통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을 충족시킬 관계들이 제도화되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편에게 이익이 된다는 '상호적 안보' 관념으로서 공동안보의 토대가 된다. 공동안보의 관념에서 안보는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군비감축을 통해 증진되며 군축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의 증진과 평화 구축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2) 평화의 개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연구자들에 의하면 평화의 중심문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무력에 의한 지배)으로서, 일차적인 평화개념은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서 개인이나 집단들, 그리고 정부들 사이에 직접적인 폭력(물리적, 언어적, 심리적)이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즉, 전쟁이나 무력갈등,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 소극적 평화개념에서는 안보도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으로 협소해진다.

이에 반해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를 평화로 보는 적극적 개념도 있다. 이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서 단순히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 권력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공평한 법적 보호와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상태를 평화로 정의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가로막는 빈곤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불의와 불평등이 종종 국제간장과 불신, 무력적 위협과 무력갈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개념에서는 안보의 개념도 인간안보라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정전협정'에 의거해 지난 50여 년간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어오고 있다.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은 냉전기의 양극체제하의 동맹과 핵 억지력에 근거한 억지와 방위만으로 한 국가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한정한 한반도 군비경쟁은 남북한을 동시에 파멸로 이끌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

이 중지되어 있는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남북한과 미국,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을 서두를 때이다. 이러한 작업을 평화체제 구축작업이라 할 수 있다.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가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체제(regime)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사용해오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설치된 기관이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합의된 원칙, 규범, 절차, 그리고 규칙을 의미한다. 남북한간의 군사대결 상태를 종식하고 협력적인 남북한 관계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호관계를 규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도할 규범, 규칙, 기관, 제도의 설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쟁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 안보를 추구하고 꾸준히 협력해 갈 수 있는 평화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정전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여성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성들이 아주 일찍부터 평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망을 키워왔고 또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¹⁾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는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파괴적인 자원낭비에 대한 여성들의 비극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은 남녀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준다. 최근의 전쟁에서는 특히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여성들과 어린이들 중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 때문에 무력 갈등시 무차별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전쟁 중과 전후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전쟁은 또한 생산과 인간의 복지에 사용해야 할 엄청난 자원을 파괴적으로 소모

1) 이현숙, “여성과 평화운동” 평화유망만드는여성회 평화교육 자료집, 21세기 평화운동과 여성, 15-16.

한다. 최근들어 세계 각국들은 파괴적인 무기생산과 국방비에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속 여성들의 기본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성들의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강제력의 사용이나 특권적 지배체제가 여성에 대한 폭력, 환경파괴, 전쟁, 그리고 핵무기의 증대 등을 낳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평화체제 구축은 이러한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평화와 인간안보 수립하는 작업이다.

2. 2005년 남북한관계 진전과 평화체제 논의 평가

1)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첫째, 평화문제에 있어서 남북한간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존재해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양자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에서 북미간 직접교섭을 통해 해결할 문제와 남북한에 해결한 문제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둘째, 남북한간, 남북한을 둘러싼 냉전구조가 철저했으며, 세계적인 추세의 탈냉전 이후에도 냉전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간 냉전구조는 남북한간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통한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주한미군의 대북 적대정책 등을 포함한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의 지속, 미국의 대 북한 강경정책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무관심,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평화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은 아직 잔존하고 있으나 남북한과 주변 관련국들을 둘러싸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 8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으며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제4항에서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합의함에 따라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 2005년 남북한 관계 평가

가. 남북대화의 복원

지난해 7월 이후 북한의 당국간 대화 및 일부 민간교류 연기 등으로 소강국면이 지속되었던 남북관계는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하반기에 빠르게 진전되었다. 즉, 남북차관급회담(5.16-19), 대통령 특사·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에 이어 제15차 장관급회담(6.21-24)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분야별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한이 북한에 대해 평화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양측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은 그동안 장관급회담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논의에 주력해왔던 점에 비취 앞으로의 논의를 정치·군사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진일보된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가 7.9-12 서울에서 개최되어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 9개 경제협약서 발효 등 경제협력 제도화와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 대해 합의하였다. 과거의 일방적인 시혜적인 남북경협에서 벗어나 유무상등, 상호보완의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남북 경제가 상호 집속할 수 있는 집점을 형성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

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중대제안]을 마련 북한에 6자 회담 복귀와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중대제안]의 내용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부는 북한에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고 한미정상회담 등 대 관련국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열린 4차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으로 남북한과 관련 4개국을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나아가 새로운 동북아 신질서를 만들어나가려는 구상에 합의하였다. 특히 공동성명은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를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장성규회담 실무대표회담이 7.20, 8.12에 두차례 개최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지역에 서의 선전수단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연락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7월의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에서는 서해상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이용, 불법어선 어로활동 방지협력 등에 합의하여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15민족대축전 기간 중에 북한 대표단은 분단 이후 최초로 6.25 전사자 위패와 무명용사 유골이 봉안된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하였고 이는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벽이었던 동족상잔의 과거사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금년들어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분야가 다양화되는 등 양과 질적인 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통일부에 의하면 남북왕래 인원은 분단이후 2004년까지 50여 년 동안 85,400명이었던 것에 비해 금년에는 9월까지 이미 68,000여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십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남북간 교역액은 9월 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1% 늘어난 7억8천800여만 달러로 이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10억 달러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대북투자 규모도 예년에 비해 올 들어 9월까지 4,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남북간 직거래를 지원하고 남북 당국간 상시 협의사무소 역할을 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10월 28일 개성에 개소함으로써 남북 경협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사회문화분야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경색하에서도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사전 공동편찬, 신계사 복원), 제도 정비(저작권), 방송, 스포츠 교류 등 민간교류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8월부터 열린 아리랑 공연을 보기위해 만여 명의 남한 주민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마. 인도적 사안

올해 초 남북관계의 잠정 소강국면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이 지연된 가운데서도 영상편지 등을 통해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비료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모멘텀을 유지해오던 중 6.15 당국 대표단 방북시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화상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되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8월 31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착공후 1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식량 및 비료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보건의료·어린이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및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의 농업개발 및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질적 변화를 꾀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 투자에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3) 남북관계 전망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

올해 장관급회담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진전을 본 남북관계는 내년도 남북관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라는 목표에 합의한 4차 6자회담의 결과로 남북관계는 그동안 외부적 장애였던 북핵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심화 발전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분야인 군사분야에서 당국간 회담이 정례화되어 초보적인 군사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과제로서는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해 해군사령부간 핫라인을 비롯한 군사 핫라인 설치를 들 수 있다.

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그동안 북핵위기와 보혁구도속의 남한여론의 확고한 지지 결여 등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추진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핵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이제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추진을 비롯한 적극적 포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야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수립 문제에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6자회담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의 남북관계 및 동북아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의제를 필요로 한다. 즉, 평화문제의 가시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포럼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포럼과 남북 당사자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행에 대해 기본적 틀을 만드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동북아 다자간 평화포럼의 입구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개발지원의 성격을 먼 대규모 대북지원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다. 북핵문제 해결 노력

4차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과 적극적인 외교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로 인한 당사국간의 긴장관계, 당국간 대화의 단절 등의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에서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 접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의 국제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향후 남한이 동북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6자회담의 진전이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노력은 특히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자간 협조를 내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여 남북교류협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6자회담 진전 과정에서 한미공조문제와 이와 관련한 국내적 갈등이 주요한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라.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와 활성화

북한이 경제개선조치, 개성공단·금강산 특구사업 등을 통해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남북 상호 이익과 북한의 개방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남북경협을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긴급구

호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보건의료 시스템 복구 등 북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발구호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남북경협과 대북 지원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통일 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지원 및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 최근 북한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실리추구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바, 과거의 경우처럼 외교안보적 사안의 발생시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왔다. 또한 북한은 실리추구적 자세의 견지와 아울러 6자회담 및 대미교섭에서의 유리한 국면조성을 목표로 '민족공조론'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문화교류는 기존의 형태와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교류분야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거나 인적 교류의 급속한 증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확대와 같은 질적인 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을 통해 사회문화교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하고 학술·종교·예술·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산가족 교류는 정례화와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는 남북간에 합의한 제11차 상봉행사, 면회소 건설 착공, 제6차 적십자회담, 화상상봉 등을 추진함에 따라 이산가족교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의 인도주의 문제에 있어 북한을 설득하여 상호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어성의 입장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원칙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9.19 공

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의 노력과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다음과 같은 기조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협력이 심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대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의 강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과 연계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남북협력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의 지속적 확대, 경제위기의 극복, 정치적 안정 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둘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은 균형 있게 보완관계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사항이 되고 있고 북한도 평화보장체계 문제는 미국과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문제에 주변국의 참여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더욱이 9.19 공동성명 문안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 관련 협상을 가질 것이라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만이 아닌 관련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당사자, 3자 또는 4자, 6자회담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미관계의 신뢰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결국 난관에 봉착한 경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상태에서의 한미관계의 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미관계의 질적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동시에 필요하고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남한정부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튼튼한 병행발전을 통해서만이 북미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의 협상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포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지

향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다자 안보협력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도 병행해서 추구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남, 북, 미 상호의 관심사와 우려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북핵 폐기, 평화정착 요구와 미국의 비확산, 대테러 정책,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및 경제지원의 요구 문제를 함께 담아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동북아평화협력체 구축 등 다단계 안보를 형성과 연계하여 다층적이고도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이를 막으려는 미국주도의 핵 비확산 의지와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탈냉전기 북미관계 정립이라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구도의 정착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이슈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함께 결국에는 북미관계 개선을 얻으려는 목적이고,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지금의 북핵문제를 통해 결국에는 향후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 및 북미관계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북핵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핵을 넘어 북미관계 정립 및 향후 동북아 신질서와 직결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북핵문제는 반드시 그 해결을 통해 북한체제 인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의 이행구도와 맥을 같이 해야 한다. 물론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은 이제 당사국들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상을 향한 ‘입구’에 진입한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추진방안을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 평화체제 등

의 4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해본다.

1단계: 평화체제 기반 조성단계

북핵문제: 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하고 IAEA와의 안전협정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고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남북 당국간 공개, 비공개 심층대화의 상설화를 통해 핵문제, 대북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등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과정, 체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논의하고 나아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와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여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북미관계: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동결 수준에 들어가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미 국무장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여 북미간 연락사무소의 설치 등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체제: 2차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대로 6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구성한다.

2단계: 평화체제 진한 단계

북핵문제: 북한 핵활동의 전면적 동결상태가 유지되고 그에 대한 IAEA의 사찰과 검증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북한 핵폐기의 절차가 이행된다. 북한 핵폐기가 6자회담의 합의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척되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거나 새로운 형식의 남북간 핵통제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논의에 대한 가시적 후속조치로서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남북한간에 구체적 차원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한반도에 운용적 군비통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상설화되고 경제사회분야에서는 남북경협의 제도화와 함께 교류협력의 본격화로 한반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조치들이 시작될 수 있다.

북미관계: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함께,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북미간의 신뢰회복의 상징적 조치로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포럼과 남북 군사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평화체제 구축 단계

북핵문제: 핵폐기가 완전히 이행 완료되는 시점이 오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및 북미간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협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미관계: 핵폐기가 완료되면 북미는 본격적인 수교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북미 평화협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에게 체제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고 막대한 경제적 협력과 자금유입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남북관계: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될 것이며, 구조적 군비통제와 더불어 남북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

어야 하며 또한 이를 주변국이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2+4)를 국제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남북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상을 실현하여 민족경제공동체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평화체제: 한반도에는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또는 동북아평화협력체를 구성하여 한반도의 안정, 평화, 협력을 동북아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게 된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적 과제

1)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우선 남북여성들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여성들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민족적 공감대와 상호신뢰를 쌓으면서 상호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사회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여성교류는 단기적 성과 내지는 과시적 목표달성이 아니라 남북한사회의 이질화 극복과 민족공동체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들간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북 간에 6.15 기념행사나 8.15 기념행사,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등이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부문상봉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02년, 2005년의 두 차례에 걸친 남북여성대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여성교류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다른 사회문화교류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는 형편이다. 최근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가 대부분 인도적 지원의 성격を 띠고 있으며 북한도 경제적 지원이 따르는 행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기반이 약한 여성단체들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교류가 이벤트성, 여성지도자 중심의 대규모 교류가 아닌 북한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 어린이 영양, 탁아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류에 일반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 평화분야(국방, 통일, 외교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와 정책 감시

통일과정에서 실재적으로 남북한여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결정자의 육성이 시급하다. 정부의 각 통일관련 기관과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올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남북교류협추진협의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8인 중 민간전문가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함) 이 민간전문가 중 여성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남북한이 합의한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도 남북 상호 적절한 수의 여성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가급적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교류시 1인 이상 여성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3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에 여성분과를 설치해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 통일 준비과정에서 통일관련 법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각계 여성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지원을 하고 나아가 통일 국가의 여성정책과 북한여성의 지위문제를 전담할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조정능력을 겸비한 '여성통일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군사분야에서 군비증강, 국방비, 주한미군 문제 등을 감시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동북아 여성 평화교류와 연대

동북아 여성들사이의 교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0년대 들어 한중, 중일 양자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면서 동북아 여성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북경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한, 중, 일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는 여성단체와 여성정책국가기구,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의 교류가 추진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여성단체들은 한국여성NGO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동아시아 여성포럼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참가해왔다.

최근에는 정부기구에서도 동북아 여성교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새로운 동북아 관계의 모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2001년에는 한, 중, 일 정부기구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가하는 동북아 여성지도자회의를 개최해 동북아 여성정책의 방향과 동북아 평화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북아 여성들간의 교류를 넘어서 여성들 사이에 국제연대활동을 활성화시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 여성들 사이의 동북아 여성연대, 한국, 일본, 미국 여성단체들간의 한미일 연대, 그리고 나아가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동북아6개국의 여성평화연대 등의 다양한 다자간 연대와 공동활동을 통해 동북아 여성들과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과 시민단체들이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위해 연대활동을 벌이고 나아가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북아 여성 평화네트워크'가 구축되어 6개국의 관련 정부기구와 비정부단체,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각 분야별로 특화된 하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구 네트워크, NGO 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 등이 각자의 기능에 맞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활동한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지식정보를 수집, 정리, 확산하는 지

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단체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본 여성단체가 중국, 한국 여성운동이 함께 6자회담의 성사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중국, 일본 여성단체들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3자간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중, 일 여성들과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기존에 지역단위에서 또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동북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단체들은 미국의 여성 또는 시민단체와의 교류의 폭을 넓혀 미국사회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미국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평화문화의 형성

평화문화는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운동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부문을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여기에서 평화정책은 국가가 주체일 수 있으나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건설은 어떤 형태이건 평화운동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적, 여성적 실천과제로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 확산, 평화교육을 포함한 평화운동을 들 수 있다.

우선 군사안보를 인간안보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보가 군대만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산을 파괴적인 전쟁준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주

민은 굶주림으로 남한 주민은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가 경제전쟁, 문화전쟁으로 국가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데 남북은 대결을 지속하며 군비경쟁에 막대한 국가자원을 낭비하며 미래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군사비를 줄이고 복지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안보를 보장하는 길이다.

평화는 군축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방비의 축소와 군비경쟁의 종식은 평화 실현의 첫걸음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를 가진 지역으로 군사적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남북한은 항상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반평화적인 군사문화에 젖들려 정상적인 사고와 삶의 패턴이 왜곡되고 인간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경우도 경험하였다. 따라서 군비경쟁의 폐해와 군비축소의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는 군축교육과 적어도 군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군축분위기의 확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실천적 활동으로서 평화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평화교육은 평화체제의 수립과 통일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적대감 보다는 화해와 관용을 배우고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공존하며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일상화와 대중화의 노력을 통해 사회내에 평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지정토론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론형성과 국민적 과제”

남 문 희

(<시사저널> 한반도 전문기자)

□ 발표 논문 중 주로 조성렬 박사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국제협력’과 관련해 견해를 제시하겠음.

-조 박사의 논문은 9.19 공동성명을, 75년 유럽의 헬싱키 선언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한 시도이며, 주목해야할 관점이라고 생각함. 특히 현재 미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미국무부 팀이 유럽의 냉전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유럽의 경험과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양상을 비교해 추적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새로운 국무부 팀이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 냉전 체제 해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지난해 11월16일 라이스가 부시2기 정부의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본격화했다고 할 수 있음. 이어 지난 2월 말 당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는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이자 동아태 차관보에 내정된 직후 국내에서 있는 한 연설에서, 왜 동북아는 유럽과 다르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OSCE()를 통해 어떻게 냉전 체제를 해체해왔는가를 자세하게 설명. 동북아판 CSCE(또는 OSCE)의 도래를 예고케 하였음. 당시 그의 연설을 들으며, 미국의 신동북아 구상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음. 그리고 그의 연설이 있은지 약 7개월 후에 9.19 공동성명으로 그 구상이 현실화했음.

-여기서 무엇이 미국의 정책을 바뀌게 하였으며, 동북아 다자안보틀이라는 새로운 정책 실험을 추동하는 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동북아 국제정치 역시 각국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각축을 벌이는 장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동북아에서 국익을 앞세운 각국의 외교게임은 묘하게도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의 방향으로 작용해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외교게임에 참여하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소위 '안보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이론의 법칙대로 움직여 가지만 그들의 행위의 궁극적 총합은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2004년 3월20일 천수이볜 대만 총통의 재선과 대만해협 위기의 발생 -2004년 9월 후진타오의 군사위 주석 장악 이후 대만에 대한 총력 집중과 그 정치 작업으로서 북한 끌어안기, 북중 밀월 관계의 성립 -이는 중국을 대북 봉쇄에 끌어 들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붕괴시키겠다는 미국 네오콘식 대북 정책의 파탄 -부시 2기 유럽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라이스의 현실주의 외교의 등장과 대북 정책 및 대동북아 정책의 전환이라는 상호 연쇄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판단 됨.

-앞으로도 미일중러의 대북 및 대한반도 정책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쇄적인 관계 속에서 물고 물리는 과정을 거듭할 것임. 최근 미국이 북에 대해 위폐문제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국내의 보수파들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것임. 지난 10월28일부터 30일까지의 후진타오 방북에서 드러났듯이, 앞으로 북중관계의 진전 상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미국의 대북 압박은 무이로 돌아가며 결국 미국도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임. 중국이 대북 접근을 멈추지 않는 한 미국 역시 강 건너 불치럼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게 현재의 동북아 구도 단기적으로 미국 대북 정책의 최대 당면 과제는 연락사무소 개설인데, 이는 바로 중국의 대북 접근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즉 영향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포스트로서 연락사무소가 부? 贊?있는 것. 이미 이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됨.

-지난해 이래 동북아의 변화를 추동해온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북중관계의 변화라고 생각. 북중관계의 진전은 이미 동북아 국제관계를 뒤흔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 러시아의 대북 접근 역시 그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뤄지지 않을 수 없으며, 중러의 대북 접근은 필연코 일본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될 것임. 한반도 외곽에서는 상호견제와 대결이 소용돌이처럼 일고 있는 반면 북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상공에서는 접근과 구애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는 이윤배반적인 정세의 흐름이 계속 될 가능성.

-바로 이 속에서 위기적 요소와 기회의 측면을 가려내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안목과 예지가 필요한 시절.

□ 조성렬 박사님의 발표 논문을 보면서, 평화협정과 (잠정) 평화체제의 차이가 무엇이며, 북한이 이 두가지 용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각각 사용하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음.

결론적으로 당사자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즉 평화협정은 여사상으로 존재하는 정전협정과 관계 속에서 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을 협상 당사자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반면 평화체제의 경우 역사와 무관한 현재의 정전체제 유지에 관여하는 현실의 당사자들, 즉 남북한과 미국이 협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

평화체제라는 말은 조박사님 논문에도 나와있는 대로, 지난 98년 북이 '잠정 평화체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뚜렷하게 부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논문에도 나와있듯이, 그보다 2년 전인 96년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이 시작됐는데, 당시 북한은 중국의 참여에 매우 부정적. 이유는 중국이 포함되면 13의 구도가 된다는 것.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고 한국이나 미국 편을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함. 또한편으

로는 현재의 정전체제 유지와는 무관한 중국을 과거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98년에 '잠정 평화체제'(일부 기록에는 평화협정이라고 돼있으나 필자의 기억으로는 평화체제)는 말을 만들어낸 배경이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 직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이 북측으로부터 들었다는 3자'상호안전보장위원회' 구상(군사정전위원회를 남북한과 미국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3자위원회로 바꾸자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짐.

-지난해 5월 한성렬의 발언에서도 한반도에 물리력을 주둔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협상의 당사자가 돼야한다고 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아닌 정전체제의 당사자, 즉 남북한과 미국을 협상 당사자로 지목.

-북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이러한 배경에서 구분해 사용하는 게 맞다면, 우리도 검토해볼 필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에 대한 것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즉 평화체제 논의는 현 정전체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의 3자가 모여서 하고, 새로운 평화체제의 윤곽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중국의 참여는 이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의 자격도 존중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끌어들이는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지정토론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을 위한 상황적 조건과 나가야 할 방향

이 은 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평화협정의 상황적 조건

- 지난여름, 베이징 4차 6자회담 논의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는 진전된 논의 있었음
이는 곧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
- 또한 11월의 APEC회의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 정례적 전략회의 개최기로 합의
 -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
 - 현재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공동노력
 - 직접 관련 당사국 간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
- 이같이 한국, 미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정전체제의 당사자들인 한·미와 중국, 북한 등 4자들이 모여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될 것

□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논의

- 한반도의 평화협정 논의는 1953년 7월17일 휴전협정 조인식 이후 끊임없이 제기 되었으나 정전협정은 반세기 동안이나 한반도를 지배하는 구시대 망령으

로 존재

- 현재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현상적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 국가 관계 등의 변화를 계기로 동요하는 측면이 큼
- 이와 같은 정전체제의 동요는 관련 당사국들에게 정전체제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평화체제의 수립으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출발점임

□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평화체제(Peace Regime)가 평화협정보다 포괄적인 개념
- 평화체제는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관리기구 설치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군비통제, 안전보장체제 등 모든 것
- 평화협정의 핵심 쟁점사항은 크게 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형식, 시기문제, 평화 관리 문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협정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지만 이때 국제적 환경도 고려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핵문제의 해결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임
- 북핵 문제 해결이후에 평화협정 문제는 동시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 평화협정의 중요한 목적은 1953이후 지속되어온 정전체제의 해체임
- 현재 정전협정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상호 규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음으로 인한 정전협정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어 그에 대한 평가가 지속되어옴

-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정전협정을 수행해온 남·북간의 분단관의 변화
- 현재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한이 구성하는 위원회로 대체되어야 하며, 현재 중립국감독위원회는 UN의 '국제평화감시단'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향후 과제

-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서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독일의 폴란드 침공 등) 역사적인 사실에서 볼 때 문서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협정 체결만으로는 부족
- 따라서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해주는 명실상부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
- 평화협정이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해주는 장기적 비전이 함께 제시되어야 보수적 시각의 반발을 불식할 수 있음
-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한 내부적 과제, 대외적 과제 해결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 주변 국가 간 관계정상화 조속 실현(북·미, 북·일수교)
 - 남·북한간 불신과 적대시하는 법체계를 평화체제, 통일대비 미래지향적으로 개정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남·북한 포함 주변국 안보협의체 구성

□ 정리

- 평화협정 시대로의 전환은 북한이 평화협정의 체결과 동시 떨어지는 군사력 부담으로 그동안 정전체제에서 군사력 유지에 투입되는 국가능력을 보다 생산적

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곧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첫 신호탄으로 그동안에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한의 활발한 인적,물적 경제적 교류를 가능케 함
- 평화협정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답론 아님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에 강대국의 힘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결국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핵심키가 될 것임
역사적 소명의식과 시대정신으로 평화협정에 대한 그 실천적 논의를 준비해야 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NGO의 역할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

21세기 들어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핵 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조속하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반도에는 이미 1991년 비핵화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0년 6.15 공동선언 등 여러 가지 합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루빨리 한반도 군사 문제의 주요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와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핵문제와 북미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한반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꺼리면서 한반도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인 평화체제 구축은 이와 같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머금고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의 재연은 우리에게 정전체제의 불안정성과 군사적 대결 종식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는 반대로 이번 위기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또 다시 위기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

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평화체제 구축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4차 6자회담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포함되면서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자회담 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별도의 포럼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될 공산이 크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유력한 수단이자 목표로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2005년 11월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양 정상은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강하기를 기대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주요 교전 당사자들이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분단을 놓고 한국전쟁을 국제전으로 만든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소이다. 이는 북미, 북일 수교가 체결돼 지연되고 있는 한반도 교차 승인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남북한의 냉전형 법·제도의 청산으로, 남측의 국가보안법 및 헌법의 영토 조항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개폐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문제의 해결로서,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군비경쟁 체제를 군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우선 4차 6자회담에서 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는 '산 너머 산'이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의 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그 성격과 지위의 변화가 불가피한 주한미군 문제,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내적 컨센서스를 확고히 하면서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NGO의 역할

대개 외교안보 현안이 그렇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정부간 협상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NGO의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는 시민사회의 저발전으로 연대의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고, 비교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한·미·일 사이에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연대가 취약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를 여론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며, 편협한 국익 논리를 넘어선 보편적 가치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상을 그려갈 수 있는 주체로 NGO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GO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미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행동은 ‘한국의 NGO는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을 감시·비판·실득·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로 하여금 대북 강경 발언이나 정책이 나오면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러한 언행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규모의 ‘전국평화대회’(가칭)를 개최함으로써 분산된 평화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민중대회, 전국농민대회와 같이 매년 특정시기에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개최하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행사에 다양한 문화 행사, 평화 교육·강연·토론회, 대중 집회 등을 포함시키면, 일반 시민·학생 및 지역 단체들의 폭넓은 참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NGO의 입장과 제안을 작성해 이를 여론화하고 정부간 협상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용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포럼' 개최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기자회견, 캠페인, 언론 기고, 각국 정부 대표단 면담 등을 통해 여론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연대의 활성화이다. 연대의 대상을 NGO로 한정하면 영향력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일반 시민·학생을 위한 실천도 요구된다. 가령 다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한류의 중심에 있는 연예인을 '평화 대사'로 섭외해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여성NGO의 역할

김 숙 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 4차6자회담 공동성명과 한반도 평화체제

- 공동성명의 기본 골격은 크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역할 △관련국들의 관계정상화 및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논의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담고 있음
- 공동성명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양자나 다자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체결 이전의 문서로 가장 위상이 높은 문서로서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기에 한쪽 당사자가 쉽게 합의내용을 어길 수 없음
- 북핵문제는 탈냉전시대 동북아 최대의 안보현안으로, 일단 핵위기를 넘기고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발판을 닦음.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동북아적 수준에서 평화적·다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 열림
- 국제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핵심요체인 한반도 평화구축은 단지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평화협정(남북이 직접 참여,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북·미·북·일 사이 상호 주권존중과 국교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건설을 합축함. 공동성명4항의 '한반도 영구평화체제'협상, '6자의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방

법에 주목해야 함

2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여성의 참여 의미

-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의 '여성 지분 확보'라는 의미를 가짐. 즉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 여성의 권리와 역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논의와 구축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적 인식의 중요성, 여성적 시각에서 본 평화와 통일체제의 과제,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요구함으로써 평화체제구축의 주체로서의 위상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여성의 참여는 여성평화협상가로서 자기 지역분쟁, 무력갈등에 주도적 역할, 중재와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 '갈등분쟁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의 여성의 참여' 이행을 결의, 권고한 국제적 근거를 공유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러한 여성참여를 통해 평화체제구축에서 남북연합단계 이행 등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위상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책임적 주체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있음
- 여성참여로 전쟁과 분단 희생자로서의 여성 삶을 반복하지 않는 동시에 급속한 통일과정에서 소외되어 통일의 피해자로 어려움에 처한 통일독일여성과 같은 경험을 답습하지 않아야 함

3 여성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지점

- 평화합의를 실제의 평화이행과 정착으로 연결해야 함. 현재 '잠정타협'을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평화상태'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 (박명림, 2005.9 한겨레)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조성단계에서 핵폐기 이행단계를 거치는 과정

에서 화해협력단계²⁾를 활성화시키고, 핵폐기 완료와 관계정상화단계에 접어들면 남북관계의 제도화 등의 진전을 예측하며 남북연합³⁾의 시기를 대비해야 할 것임.

- 화해협력단계에 있는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정책방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냉전구조를 해체하며 남북 여성간의 교류협력을 여성의 입장에서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례화, 제도화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임.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성평화운동을 동북아차원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

4.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첫째, 정부와 여성NGO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둘째, 그러한 여성NG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NGO간의 연대를 확보하고, 셋째, 이러한 역량을 갖춘 여성NGO가 여성참여와 여성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은 9.19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이행구도와 그 맥을 함께 할 것이며, 여성NGO의 위와 같은 역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행구도의 맥락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임
-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6자회담의 타결에 계기가 되었듯이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직접 최대 당사자이기에 주도성을 견지해나가야 하듯이 동북아연대에서 한국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함

2) 노무현정부의 동북아평화번영정책에서 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은 화해협력, 평화공존, 정전통임이다. 정부의 통일과정 3단계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이다. 1단계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하는 '기본합의서'이행 실천단계이다.

3)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를 통하여 증진된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1민족2국가'의 '남북연합'을 실현하여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공동생활권을 구축하는 단계로 시 '남북연합헌장'또는 '민족공동체헌장'의 실천단계를 의미한다.

1) 정부와 여성NGO의 역할 분담론

-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기본 논의구조는 정부간의 4자포럼의 틀 속에서 이뤄질.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관계를 비롯한 국제공조속에서 민족공조를 형성하는데 일정 정도 제한점을 노정할 수 있고, 여성적 인식에 한계를 가지게 됨
- 따라서 여성NGO는 첫째, 정부간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의제를 개발하고, 둘째, 정부간 협상에서 자칫 방기할 수 있는 여성적 의제를 주요 과제로 개발해야 함
- 이러한 여성NGO의 역할이 평화체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임을 정부에 이해시키고 그 역할을 확보해야 함

2) 평화체제를 위한 여성네트워 형성

-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여성평화네트워형성은 남북 차원,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이 필요함. 기존의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차원에서 형성된 남북간, 동북아간의 네트워은 단체별로 개별적인 접근이 많아 경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평화체제를 위한 연대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각 NGO가 갖고 있는 연대를 재구성하고, 국가간의 NGO연대를 동북아차원에서 형성해야 할 것임. 즉 동북아디자인보를 위한 NGO평화네트워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한반도평화구축과 동북아지역안보라는 의제를 함께 다루는 전망이 필요함

① 남북관계 차원의 여성평화네트워 형성

- 북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 기존의 남북여성교류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평화역량이 발휘되어야 함. 남북여성동일행사 중심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며, 보

다 구조적이며 구체적인 새로운 사업방식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함.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을 정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방안을 개발·실천하며, 제도화에 대비함

- 남북여성공동행사 지속 발전
 - 경제협력사업 개발: 경제개발과 여성인력에 대한 기술, 투자지원 등
 - 이슈별 연구 및 지원사업: 여성정책, 여성사 등
 - 2차례의 남북여성통일행사의 경험을 통해 여성들은 여성운동의 통일에 대한 자기정체성에 진지한 사고를 하게 됨. 통일의 과정을 현실로 경험하며 남과 북 사이에 놓인 커다란 거리 즉 너무나 다른 두 나라, 두 여성 속에서 통일 의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조정이 가능한건지, 여성이 선택할 목표와 과정은 무엇인지 깊은 성찰을 요구받음.
 - 결국 어려운 현실을 넘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기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여성평화운동의 중심을 갖는 것임. 민족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 등과 대별되는, 이를 위해 남과 북의 현실을 넘어 기계적인 교류가 아닌 원칙과 현실의 유연한 결합, 전략적 사고, 외교적 역량이 필요함. 당위와 선언에서 구체적인 평화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o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포럼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한반도평화협정체결, 국제적 보장방안에 대비하여 남북여성간의 논의를 준비하고 시도함
- 6.15공준위 남측여성본부, 북측여성분과위원회 간의 여성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여 비정부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
 - 남과 북의 여성 GO정부간 채널 형성, 여성 의원들의 채널 형성 시도, 남북정부간 대화에 개입, 국제적 영향력 행사해야 함

② 동북아 차원의 여성평화네트워크 형성

- o 일본군중군위안부문제를 국제적으로 전개해온 정대협이 축적된 연대활동을 한반

도·동북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여성평화네트워크로 연결시킴. 국제연대의 성공사례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해국에 대한 배상과 당국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이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 것임. 이는 성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을 뿐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평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둠. 또한 일본정부의 전쟁책임 확인과 배상을 위해 2000년 12월 ‘국제민간도교법정’을 개최한바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함(이정옥,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자료집』, 2001)

-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본, 중국, 북한, 미국 등의 정대협 활동지지 및 연대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 정대협의 다양한 국제활동 경험 가운데 동북아 민간여성 6자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개발

- o 평화여성회의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일본여성단체들과 함께 3.8여성대회 메시지를 보내고,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운동, 일본의 군사주의 반대, 남북화해협력에 연대하는 등 한·일여성연대를 다지고 있음. 무력갈등예방을 위한 동북아행동의제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국제적, 동북아 차원에서 전개한 바 있음. 일본의 시민, 여성단체들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평화 및 통일 지원, 일본의 군사주의 반대를 함께 하라고 요청한 바 있음. UN, 시민사회, 정부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안해옴

- 동북아 여성 주관: 동북아 민간여성6자회담(정부 옵서버)
-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공동대응
- 동북아평화체제의 방향과 대안 제시

- o 기존의 동북아 차원의 활동 분석과 함께 이 활동들의 한반도평화유지와 기여도, 전망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감.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남북간, 남·북·중·미간 네트워크 형성, 동북아다자공동안보들을 위한 남·북·중·미·

라·일간 형성 그리고 유럽 시민사회의 지원 등을 모색함

3) 평화체제구축에서 여성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화 과제

① 여성평화협상전문가의 양성, 훈련 장치 마련

- 분쟁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은 과할 수 없는 운명임.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평화 틀의 형성을 위해 관련국의 상대를 잘 알고, 관련국의 역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역할을 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관련국가의 여성·NGO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함. 네트워크의 조직역량, 국제사회의 이해, 북한사회에 대한 구조적 이해, 중재와 협상의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한 여성평화협상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이 시급함

- 동북아분쟁의 역사와 여성평화협상전략
- 무력갈등의 중재, 협상 훈련

②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여성 참여와 정책 제시 정례화

-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관련된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민간, 정부적 차원에서 추동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책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을 정례화해야 함

- 2005년12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비판적 제정운동, 통과시 개정운동을 펼쳐나가야 함: 여성·시민사회가 주장한 성평등의 원칙과 위원회구성에서 특정성이 70%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적 측면의 내용, 민간의 참여로 통일의 거버넌스를 주장한 내용 등이 반영되지 않음

- 남북교류추진에 관련한 모든 위원회, 분과, 부문별 모임에 여성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제시, 압력의 역할을 수행함
 -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통일참여대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통일 전담부서’가 시급함: 오랜 요구에도 신설되지 않음에 위기
 -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성인지적 예산 요구활동
- o GO내 여성안보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대비한 외교통상부, NSC, 통일부, 국방부, 여성부 등의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여성이 평화체제구축과 그에 따른 통일과정의 진행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양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GO여성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보가 요구됨
 - GO내 여성전문가·실무자 양성코스개발로 여성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 현 정부 관련 여성인적현황을 분석, 접근. 예)관련부서 여성사무관 훈련

4) 평화교육의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o 평화가 무엇이며, 평화는 어떠한 수단과 과정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평화공존의 중요성, 평화체제 구축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안의 냉전은 무엇인지, 통일과정에서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평화인식을 국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동북아평화체제, 다자안보협력기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평화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평화교육의 일상화, 대중화 지원
 -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대한 국민적 홍보, 미디어를 통한 교육

□ 부 록

6자회담 타결 공동성명 전문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켄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 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 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부 록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행 목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 주민등록번호	성명 남 ☐ 여 ☐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을곳 자택 ☐ 직장 ☐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기타 ☐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 연2만원 ☐ 연3만원 ☐ 기타 ☐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가입동기		
관심분야	정세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평화교육문화 ☐ 갈등해결 ☐ 평화심성 ☐ 소식지발행 ☐ 스터디모임 ☐ 평화축제 ☐ 기타 ☐	
가입일	200 년 월 일	

□ 매 모

□ 메 모

